

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강석주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태, 김인제,
남창진, 박승진, 송도호,
유만희, 유정희, 이영실,
정준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'전세사기'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서울시 공동체 주택 입주민의 주거불안이 높아지고 있음
-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공동체주택 사업자의 이용에 구조적 제약이 있고, 그 외 타 보증기관의 임대보증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증보험료가 높아 운영주체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임
- 이에 공동체주택 보증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체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보호 및 공동체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체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(안 제7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보조”를 “보조,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동채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) 시장등은 공동채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공동채주택 건설 · 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<u>보조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	<p>제7조(공동채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)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보조,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(주택실 임대주택과) 확인 결과 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